
제1차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23~'27)

2023. 1.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목 차



I. 기본계획 개요	1
II. 농업재해보험 도입배경 및 경과	2
III. 농업재해보험 운영현황	8
IV. 성과 및 한계	12
V. 추진방향	15
VI. 세부 추진과제	16
1. 농가의 재해대응력 제고	16
2.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험 운영체계 확립	21
3. 지속 가능한 보험 운영기반 마련	27
4. 중장기 발전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	31
VIII. 추진일정	34

I. 기본계획 개요

- (성격) '제1차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은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조의2에 규정된 5년 단위 법정 계획임

제2조의2(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재해보험(이하 "재해보험"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3조에 따른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또는 어업재해보험심의회 심의를 거쳐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22.6.1 시행)으로 5년마다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 수립·시행 의무화 후 처음 마련되는 기본계획
- 농업재해보험이 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여 농업 경영 안정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장기 추진방향 제시

- (내용) 재해보험사업의 발전 방향 및 목표, 가입률 제고 방안, 대상 품목·지역, 재해보험사업 지원·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

- 기본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주요 과제별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 시행할 계획

제2조의2(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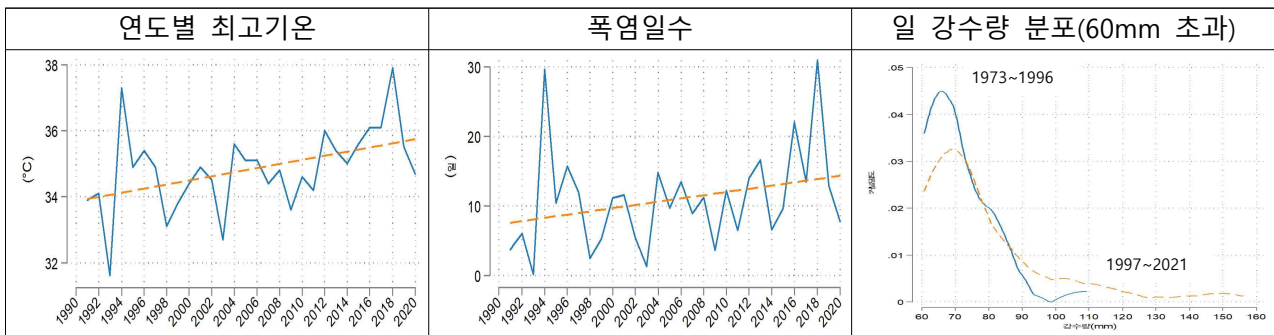
1. 재해보험사업의 발전 방향 및 목표
2. 재해보험의 종류별 가입률 제고 방안에 관한 사항
3. 재해보험의 대상 품목 및 대상 지역에 관한 사항
4. 재해보험사업에 대한 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해보험 활성화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Ⅱ. 농업재해보험 도입배경 및 경과

1 농업재해보험의 의의

□ (기후변화) 기상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농업 특성상, 기상재해가 빈번해지고 심화되고 있어 농업 경영 위험 증가

○ 일 최고기온, 폭염 일수, 강수 강도 등이 모두 증가 추세로 기후 변화와 기상이변에 대비할 필요성 증가



※ 출처: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KREI, '22)

□ (경영안정) 기상재해는 예측 불가능하며 동시다발로 광범위하게 발생하므로 피해규모가 크고 예방에 한계가 있어 경영안정 제도 필요

○ 농가 경영불안 해소로 안정적 농산물 공급여건을 마련하고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여 소비자 후생 증가 및 식량안보에 기여

□ (재해보험) 보험은 우발적 대규모 피해로 인한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며 당사자의 예방 노력을 도모할 수 있는 효과적 수단

◇ (보험 제도)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일정한 위험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나 부담을 덜기 위해 다수의 경제주체가 협동하여 합리적으로 산정된 금액을 조달하고 지급하는 경제적 제도

◇ 보험의 주요특성

- ① (손실 풀링) 여러 사람이 모여 약정한 금액을 내고 어려운 일에 마주한 사람을 도움
- ② (우연발생적 손실) 의도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불의의 우연한 손실에 대해서만 보상
- ③ (리스크 이전) 개인 위험에 대한 손실보상을 계약을 통해 보험사로 이전
- ④ (실질 손실 보상) 실질적인 손실 금액을 지급하여 손실 발생 전 재무적 상태로 복원

□ (직접지원과의 차이) 재해대책 제도(직접지원)와 재해보험은 재해로 인한 손해의 보상 정도, 그에 따른 소요 예산 등에서 차이

○ 재해 복구 및 피해 농가 지원을 위해 재해대책 제도를 도입·운영('67~) 중이나, 재정부담으로 충분한 피해보상에 한계

- 피해 규모에 상응하는 직접지원은 많은 비용이 소요되며, 고위험지역에 생산 인센티브 제공으로 과잉 생산을 야기한 사례(미국*)도 존재

* '73년 직접 재해보상제도를 도입했으나 과잉 생산 등 부작용 문제로 '80년 농작물재해보험으로 대체

○ 이에, '보험의 원리*'를 이용해 피해 규모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피해 농가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보험을 도입(가축 '97, 농작물 '01)

* ① 대수의 법칙: 다수의 주체가 위험집단을 이룰 때 우연한 사고의 발생을 예측 가능

② 수지상등의 원칙: 보험상품의 보험료 총액과 보험금 총액은 일치

- 손실이 아닌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효율적 재정지원 가능

□ (정책보험 필요성) 농업재해는 피해 범위와 규모가 막대하기에 시장을 통해서는 공급 불가능하여 정부 개입 필요

* 미국, 일본, 스페인 등에서도 농업재해보험을 정부 주도의 정책보험으로 운영 중

○ 손해율 변동이 크고 예측 불가능한 거대재해 시 보상금 규모가 급증하여 민영보험으로는 운영의 안정성·지속가능성 담보 불가

* 과거 풍수해 피해를 보상하는 화재보험의 풍수해위험담보특약(민영보험)이 있었으나 보험인수 회피 등으로 가입률이 매우 저조해 보험 기능 상실 → 풍수해보험 도입('06)

○ 반면, 보험상품의 효율적 운영 측면에서는 민간보험사가 우위

⇒ 이에 보험상품은 민간보험사를 통해 판매하고 정부는 보험가입·운영을 지원하는 형태로 보험제도 도입·운영

미국 농업재해보험

- (농작물재해보험) 모든 자연재해로 인한 수확량 감소와 가격 하락을 보장하여 농가 경영안정 도모('38~, '80 확대)

* 근거법령: 연방농작물보험법(Federal Crop Insurance Act, 1980)

- (지원내용) 보험료의 38~77%* 및 운영비(보험료의 15~16%) 지원

* 상품별로 보장수준(50~90%)에 따라 보험료 국고보조율 상이, 농가는 보조금 제외한 보험료 및 행정비용(작물당 \$30) 지불

- (상품구성) 24개 상품*(보장종류), 129개 품목(상품별 가입가능품목 상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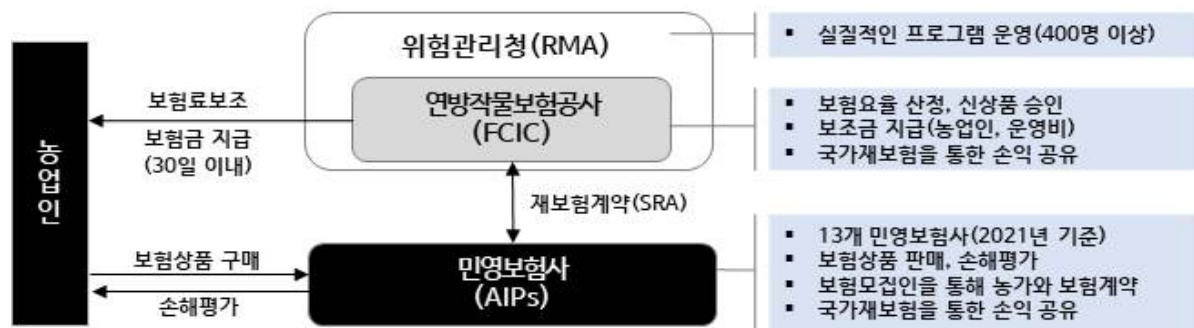
- 수량보장(YP), 과거수량보장(APH), 수입보장(RP) 등

- (가입률^{추정}) 지속 증가추세로 '20년 기준 61.9%로 추정

* ('00년) 28.3% → ('05) 36.4 → ('10) 39.3 → ('16) 45.2 → ('18) 52.1 → ('20) 61.9

* 기관의 공식 발표 통계는 없으며, 미재배면적 통계와 보험가입면적을 활용해 추정

<미국 농작물재해보험 운영체계>



- (기초농업대재해보험) 큰 수확량 감소 손실을 보장하는 관리 수단으로, 수확량이 기준수확량의 50% 이하로 감소 시 손실 보상

* 근거법령: 연방농작물보험개혁법(Federal Crop Insurance Reform Act, 1994)

- (지원내용) 보험료 100% 지원(농가는 행정비용(작물당 \$655) 지불)

- (보장수준) 수확량이 기준수확량의 50% 이하로 감소 시 감소분에 대해 기준가격의 55%로 보상

- (상품구성) 10개 상품, 111개 품목(상품별 가입가능품목 상이)

1. [도입기] 보험 운영 및 위험관리체계 기틀 마련 2001~2006

- (보험 도입) 재해 피해가 크고 보험수요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 (사과·배)·축종(소)을 대상으로 재해보험 도입·확대(농작물 '01~, 가축 '97~)
 - 품목·축종별 재해 피해 양상 등을 고려하여 보장방식을 다르게 적용
 - 농작물은 태풍·우박·동상해 등 특정 재해로 인한 수확량 감소를 보장하는 방식(특정위험방식)으로 도입
 - 소·말은 종합위험방식, 그 외 축종은 특정위험방식으로 도입
 - * (소·말)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폐사, (그 외 축종) 풍수해·화재 등으로 인한 폐사
 - 농가 가입을 유도하고자 보험료와 운영비 국비 보조
 - 자기 책임성, 피해 예방 노력 유도를 위해 보험료 보조율을 50%로 설정
 - * 국내외 정책보험 지원비율: (국내) 풍수해보험 56.5~68.05%, 양식수산물재해보험 50%, (해외) 미국 농작물재해보험: 38~77%, 일본 농업공제 50~55%
 - 과수와 대가축·가금류 중심으로 대상 품목·축종 확대
 - * 농작물: ('01) 2개 → ('02~'05) 6(+포도복숭아단감감귤) → ('06) 7(+뽕은감) → ('07) 10(+밤참다래자두)
 - 가축: ('97) 1종 → ('00) 3(+돼지말) → ('02) 4(+닭) → ('04) 5(+오리) → ('05) 7(+평매추리) → ('06) 9(+찰면조사슴)
- (재보험 도입) 거대재해를 계기로 위험의 일부를 국가가 인수하는 국가재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안정적 보험 운영 기반 마련('05, 농작물)
 - 재해보험 도입 후 연이은 거대재해로 위기관리장치 필요성 제기
 - * '02년 태풍 루사로 433.5%, '03년 태풍 매미로 290.8%의 손해율을 기록
 - 재보험기금을 설치하여 국가가 재보험사로 참여하며, 기준손해율 (180%)을 초과해 발생하는 손실을 국가가 부담하는 초과손해율방식 적용

2. [정착기] 보장 확대 및 운영관리체계 정비로 성장을 준비 2007~2014

- (보장 확대) 종합위험방식을 도입하고 품목·축종과 보장 재해를 지속 확대하여 농가의 재해대응 안전망을 보다 견고하게 구축('07~)
 - 보상 가능한 모든 자연재해를 보장범위에 포함하는 종합위험방식을 적용하여 다양한 재해로부터 농가를 보호('07~)
 - 국가재보험제도 도입을 계기로 과수에 이어 식량·채소작물 및 가축의 축사시설('07)과 양·꿀벌 등 기타가축('08~'13)도 포함
 - * 농작물 : ('07) 10 → ('08) 15 → ('09) 20 → ('10) 25 → ('11) 30 → ('12) 35 → ('13) 40 → ('14) 43
 - 가축: ('07~'08) 11 → ('09) 13 → ('10) 14 → ('11) 15 → ('12~) 16
 - 농가 노력으로 방제가 어려운 일부 병충해를 보장범위에 포함('09, 벼), 가축은 폭염('12, 돼지·가금)과 화재대물배상('13, 축사) 특약 추가
- (재보험 개편) 재보험의 운영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국가와 보험사 간 기준손해율을 조정하고 손익분담방식 도입
 - 손해율 급증*으로 인한 민간보험사의 이탈을 방지하고자 기준 손해율을 하향 조정**('13)하고 위험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14~)
 - * '11년 봄동상해·냉해·태풍 등으로 119.5%, '12년 태풍으로 357.1%의 손해율 발생
 - ** ('05~'12) 180% → ('13) 150 → ('14~'16) 고위험군 150/중위험군 165/저위험군 180/시범사업군 160
 - 국가와 민간 보험사업자가 손실뿐만 아니라 이익까지도 정해진 비율로 분담하는 재보험 손익분담방식* 도입('14)
 - * 손해율이 높아지면 국가의 손실 부담 비율이 커지고, 손해율이 낮아지면 국가의 이익 수취 비율이 커지는 구조로 설계
 - 신규품목 대상 시범 적용 후 점진적 전환(초과손해율→손익분담방식)
 - * 손익분담방식: ('14~'16) 시범 적용 → ('17~'18) 순차 확대 → ('19) 전면 적용

- (운영·관리 고도화) 손해평가사 제도 및 보험사업 전담기관 운영
 - 농업재해보험 관련 손해평가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손해평가사 국가자격제도 신설('14)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재해보험사업 운영 효율화 및 관리 강화 추진('15~)

3. [성장기] 보험제도 품질개선으로 가속 성장 2015~2021

- (보험선택권 확대) 가입자별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상품 다양화
 - 농가가 자연재해 또는 시장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입 감소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입보장보험 도입('15)
 - * 품목: ('15) 3개(콩·포도·양파) → ('16) 4개(+마늘) → ('17) 6개(+고구마·가을감자) → ('18~) 7개(+양배추)
 - 자기부담비율* 및 특약 다양화** 등 통해 보장수준 선택권 확대
 - * 벼 10·15%형 도입('15), 과수 4종 10%형 추가('18), 40%형 신설('21) 등
 - ** 과수 동상해('17, 감귤), 원예시설 재조달가액 보상('21)
- (적정 보험료 부과) 농가별 위험수준에 따른 보험료 부과기준 마련
 - 특정 지역의 높은 손해율로 전체 농가의 보험료가 상승하지 않도록 요율 산정단위*를 세분화하여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 전가 최소화
 - * ('01~'04) 시·도 → ('05~) 시·군 → ('22~) 시·군 + 읍·면(사과·배)
 - 과도한 상승 방지 및 시·군 간 격차 완화를 위해 요율 상한선 설정('18)
- (품질 제고) 품목 확대와 함께 현장 수요 기반 상품개선시스템 운영
 - 지속적인 품목 확대를 위해 신규품목 도입기준 정비
 - 연 2회(상·하반기)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거쳐 보험상품 개선('21~)

Ⅲ. 농업재해보험 운영현황

1

농작물재해보험

- (가입) '01년 농작물재해보험 도입 이후, 대상 품목·가입 지속 확대
 - '22년 기준 보험 대상 품목(70개)·축종(16종)의 총생산액은 31.7조원으로 전체 농림업생산액의 90.1% 수준
 - 가입률(가입면적/대상면적)도 지속 증가하여 '22년 49.9% 기록
 - * 주요 품목별 가입률: 사과 89.4%, 배 76.8%, 벼 59.5%
- (지급) '01~'22년 동안 총 5조 2,184억원의 보험금을 지급(농가 납부 보험료 1조 401억원의 5.0배), 재해위험 대비 농가 경영안정 장치 역할
 - 가입 증가와 재해 발생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액도 증가하여 최근 3년('20~'22) 동안 53만 농가에 2조 1,456억원(누적 보험금의 41.1%) 지급
 - 지급 보험금의 35.5%(7,611억원)가 과수 4종에 배정
 - '01~'22년 동안 누적 손해율은 97.9%이며, 재해 발생에 따라 연간 손해율 변동이 매우 큼(최대 '02년 433.5% vs 최소 '15년 18.2%)
 - * 연도별 손해율: ('01) 45.7% → ('10) 104.6 → ('20) 150.6 → ('21) 74.2 → ('22) 65.0
- (지원규모) '01~'22년 동안 보험료와 운영비 지원에 총 3조 7,716억원의 예산을 투입, 연평균 28.7% 증가
 - 보험 가입 증가에 따라 정부의 보험료·운영비 재정지원 규모도 증가하여 최근 5년(2조 2,122억원) 동안 총지원액('01~'22)의 58.7% 투입

< 농작물재해보험 추진실적 >

(단위: %, 억원)

	'01	'05	'10	'15	'16	'17	'18	'19	'20	'21	'22	'01~'21
가입률	17.5	23.4	13.6	21.5	27.4	29.7	32.9	38.8	45.0	49.4	49.9	-
지급보험금	14	239	903	524	1,069	2,797	5,345	8,980	10,158	5,740	5,558	52,184
지원예산	28	494	696	2,072	2,362	2,307	3,623	3,289	4,636	4,955	5,618	37,716

□ (가입) '97년 가축재해보험 도입 이후 빠른 속도로 가입 증가

- '22년 기준 총 16개 축종에 대해 가축재해보험을 운영 중이며, 대상 축종을 지속 확대하여 대다수 축종이 보험 대상에 포함
 - * 연도별 대상 축종: ('97) 1종 → ('00) 3 → ('05) 7 → ('10) 14 → ('12~) 16
 - * 축산법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가축 축종 19종(관상용 조류, 곤충, 지렁이 제외) 중 16종 포함
- 가입률(가입두수/대상두수)은 '15년 이래 90% 이상 유지
 - '22년 기준 가입률은 94.7%이며, 소를 제외한 대규모 축종(대상두수 3백만두 이상) 모두 가입률 70% 상회
 - * 주요 축종별 가입률: 소 13.6%, 돼지 98.6%, 닭 98.5%, 오리 83.9%

□ (지급) '01~'22년 동안 총 1조 7,574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여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화에 기여

- 최근 3년('20~'22) 동안 3만 농가에 4,618억원(누적 보험금의 26.3%) 지급
- '01~'22년 동안 누적 손해율은 97.7%이며, 농작물 대비 상대적으로 손해율 변동이 작은 편(최대 '18년 156.1% vs 최소 '01년 61.8%)
 - * 연도별 손해율: ('01) 61.8% → ('10) 94.1 → ('20) 80.8 → ('21) 78.9 → ('22) 93.0

□ (지원규모) '01~'22년 동안 보험료와 운영비 지원에 총 1조 789억원의 예산을 투입, 연평균 16.0% 증가

- 최근 5년(5,214억원) 동안 총지원액('01~'22)의 48.3% 투입

< 가축재해보험 추진실적 >

(단위: %, 억원)

	'01	'05	'10	'15	'16	'17	'18	'19	'20	'21	'22	'01~'21
가입률	21.7	37.9	53.1	90.7	92.4	92.9	93.0	93.3	92.8	93.7	94.6	-
지급보험금	42	185	483	885	1,254	1,292	2,393	1,743	1,477	1,462	1,552	17,574
지원예산	47	150	317	536	601	717	920	1,056	1,075	1,107	1,055	10,789

3

수입보장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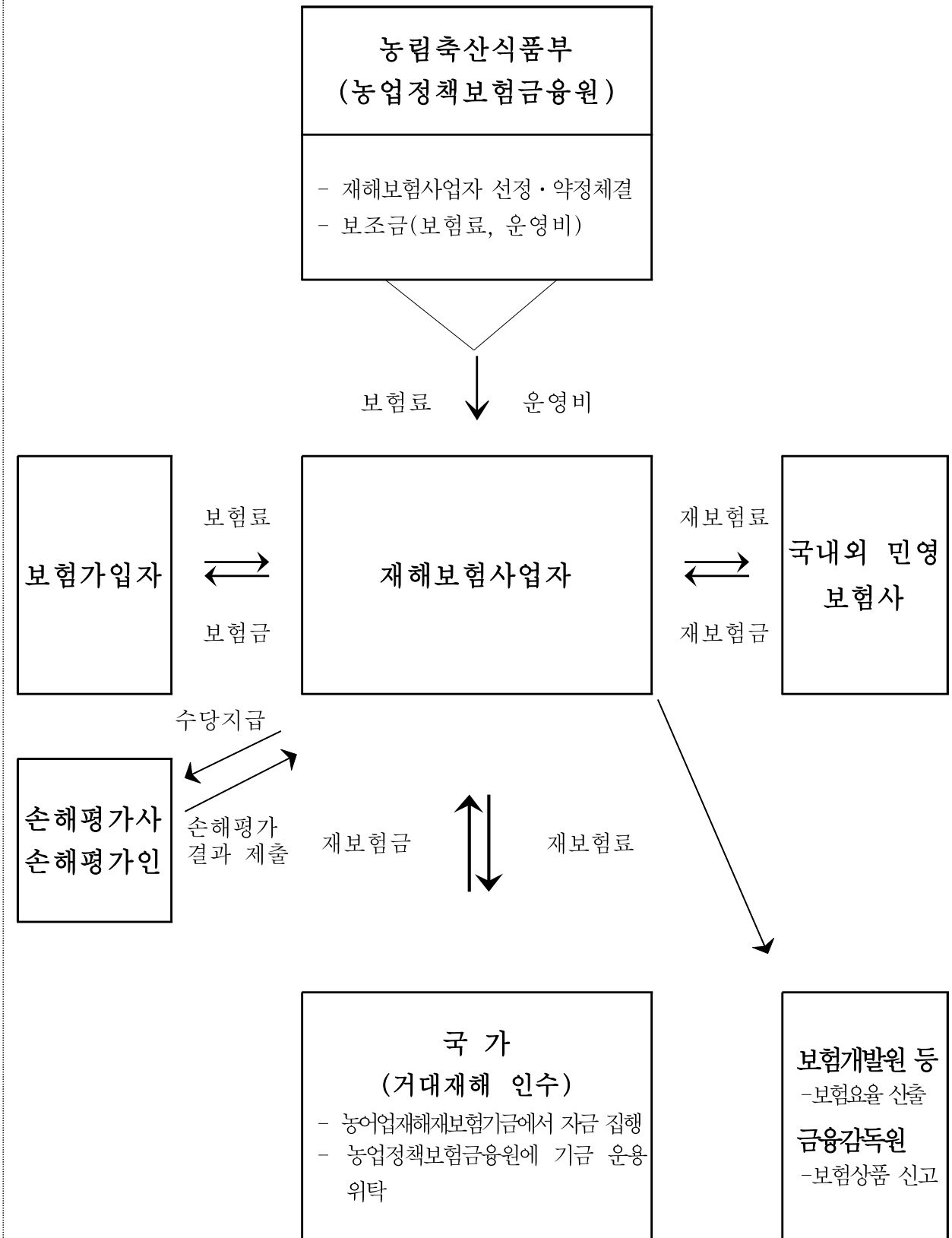
- (가입) '15~'22년 동안 총 14,663ha, 16,186 농가 가입
 - 품목별 주산지 등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어 가입률* 저조
 - * 연도별 가입률: ('15) 12.4% → ('17) 20.3 → ('19) 3.7 → ('20) 4.2 → ('21) 3.0 → ('22) 3.2
 - '22년 기준 총 7개 품목 1,141ha, 1,566 농가 가입
 - * ('15) 3개(콩·포도·양파) → ('16) 4(+마늘) → ('17) 6(+고구마·가을감자) → ('18~) 7(+양배추)
- (지급) '15~'22년 동안 총 11,165 농가에 보험금 832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누적 손해율*은 138.0%
 - * 연도별 손해율: ('15) 7.7 → ('17) 31.5 → ('19) 185.6 → ('20) 55.8 → ('21) 67.8 → ('22) 110.0
- (지원규모) '15~'22년 동안 보험료와 운영비 지원에 총 453억원의 예산 투입

4

국가재보험

- (재보험 운영) 원수보험사가 인수한 농작물재해보험의 일부를 민영재보험사('01~)와 국가('05~)에 출재하는 방식으로 운영
 - 손익분담비율 도입 전까지 75~90%를 민영재보험사가 인수하였으나, 도입 이후 국가가 본사업의 54~94%*, 시범사업의 96~99%*를 인수
 - * 손해율에 따라 국가와 민영재보험사의 인수비율이 달라짐
- (손익 분배) 초과손해율방식 적용 기간 손실 대부분을 국가가 부담하여 수지 불균형이 컸으나, 손익분담방식 도입 후 완화
 - '21년 기준 이익 2,008억 원을 국가(1,281)와 민영보험사(727)가 분담
- (기금 운용) '22년까지 총 1조 2,029억 원을 조달하여 재보험금 등 9,911억원 지급, 2,118억원은 여유자금으로 운용

농업재해보험 운영체계



IV. 성과 및 한계

1. [성과] 더 많은 농가가 보험을 통해 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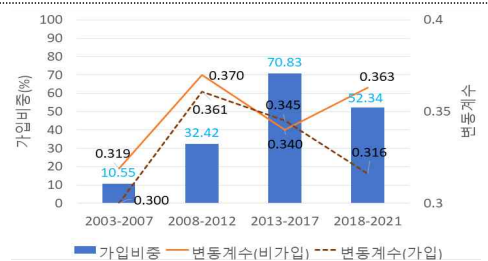
□ (경영 안정화) '01~'22년 동안 총 318만 농가가 보험을 통해 자연재해 피해 대비 경영 안전망 구축

○ 총 121만 농가에 총 7조 591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여 재해로 감소한 수입을 보전하고 수입 변동 완화

* 연평균 55천 농가에 평균 6백만원의 보험금 지급

<참고> 보험의 수입 변동성 완화 효과('22, KREI)

- ▶ 수입이 낮은 시기 보험금으로 수입을 보전받고, 높은 시기에는 보험료만큼 차감되는 효과
- ▶ 보험 가입 농가의 수입 변동성은 안정적인 감소세, 비가입 농가의 변동성은 불안정한 증가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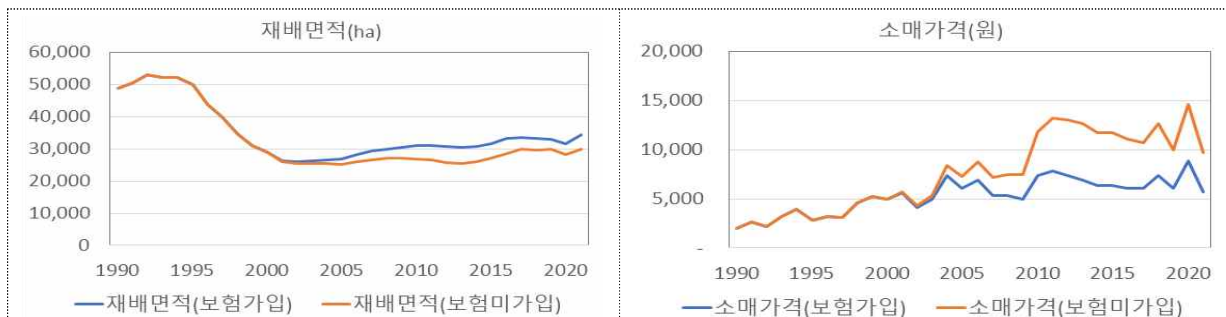
<보험 가입 여부에 따른 수입 변동계수>

○ 농업소득의 변동성 완화는 농가의 투자 확대 유인으로 작용하여 투자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효과도 발생

* 농가경제조사 자료 분석 결과, 보험 가입으로 감소한 위험만큼 대출 통해 투자 확대('22, KREI)

□ (생산·가격 안정화) 자연재해에 기인한 수입 하락을 보상하여 피해 농가가 생산을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농가의 보험 가입으로 소비자는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농산물 구매 가능



농업재해보험 도입에 따른 재배면적 및 소매가격 변화('22, KREI)

2. [한계] 보험의 질적 성장과 운영 고도화 측면의 개선 요구가 많은 상황

- (재해대응력 편차) 품목 확대, 상품개선 등에도 불구하고 재배 품목, 축종 등에 따라 농가별로 재해 피해 대응력에 차이 존재
 - 미도입 품목, 병충해 미보장 등 보험 사각지대가 있고, 상품개선이 보장수준 상향, 보험요율 산정기준 조정 등 외형 측면에서 진행
 - 품목 확대, 병충해, 품질하락 보장 등에 대한 현장 요구 지속
 - 현장 수요를 기반으로 한 상품개선(연2회) 체계상 종합적 검토에 한계
 - 품목·축종별 가입률 편차가 크고, 높은 보험료율이 가입장벽으로 작용
 - 최근 5개년('18~'22) 평균 가입률이 10% 미만인 농작물 품목이 있고, 4대 축종* 중 소 가입률은 12.5%에 불과
 - * 최근 5개년 평균 가입률: 소 12.5%, 돼지 97.1%, 닭 97.9%, 오리 78.9%
 - 상대적으로 위험이 높은 농가가 주로 가입하여 요율상승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우량농가 가입 저해의 악순환 유발 우려
- (운영상 미비) 본사업과 시범사업 구분이 모호하고, 인수·손해평가가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등 운영과정에서의 미비점 보완 필요
 - 농작물재해보험 품목 도입 시와 국가재보험 유형 구분 시의 시범사업과 본사업 구분 기준이 모호하고, 전환기준 부재

< 농작물재해보험 본사업-시범사업 구분 기준 >

	품목 도입 및 지역 확대 시	국가재보험 유형 구분 기준
기 준	▸ 시범사업: 보험의 효용성·실시 가능성 등 검증 위해 일정 기간 제한된 지역에서 실시 ▸ 본사업: 시범사업 후 전국 실시	▸ 시범사업 품목: 고위험 유형 ▸ 본사업 품목: 중·저위험 유형
문제점	▸ 시범사업임에도 전국에서, 본사업임에도 일부 지역에서 판매되는 품목 존재	▸ 본사업 품목 일부를 시범사업 유형으로 조정('21)하여 구분 기준이 모호

- 인수는 5~6월에, 손해평가는 10월에 집중되어 인수 소홀, 손해평가의 적시성·공정성·정확성 등 문제 제기 지속

- 벼 가입 증가에 따른 인수·손해평가 물량 집중 심화로 타 품목에도 영향

< 2021년 월별 인수 및 손해평가 농지 수 >

(단위: 건)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인수	전체	873	96,804	134,091	243,922	712,966	1,108,597	135,614	82,207	59,414	119,928	214,088	7,497
	벼	-	-	-	136,002	573,075	999,290	-	-	-	-	-	-
	벼 외	873	96,804	134,091	107,920	139,891	109,307	135,614	82,207	59,414	119,928	214,088	7,497
손해평가	전체	5,447	4,917	3,860	4,564	16,881	33,634	85,729	43,404	63,454	350,341	36,575	7,847
	벼	19	1	-	72	306	831	2,432	1,279	25,435	316,386	5,371	565
	벼 외	5,428	4,916	3,860	4,492	16,575	32,803	83,297	42,125	38,019	33,955	31,204	7,282

- 월별 손해평가 물량 차이가 크고, 연도별 인력 공급 규모*도 일정하지 않아 거대재해 고려 시 적정인력 수급에 어려움 예상

* 손해평가사 합격자수: ('16~'20) 1,705명(연평균 341) → ('21) 2,233 → ('22) 1,017

- (지속가능성) 보험 운영에서의 공공성·투명성 강화가 요구가 크며, 손해율 급등락 등 위기 상황 대응 전략 및 지원 형평성 제고 필요

- 보험상품의 설계·운영 과정에 대한 정보공개, 보험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도 요구

- 거대재해에 따른 손해율 급등 등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보험요율 및 재보험 유형 구분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 필요

- 한정된 예산 내에서 지원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보험 운영 과정에서의 정부 지원체계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

- 정부의 보험료 지원이 가입률이 높은 품목과 경영규모가 큰 농가에 편중될 수 있음

V. 추진방향

농업재해보험 확대로 폭넓고 촘촘한 농가 경영안전망 구축

◆ (목표) 탄탄한 보장으로 농업재해보험 가입 증대

- 보험 가입 농가: ('22) 55만호 → ('27) 63만호(15% ↑)
- 농림업생산액 대비 보험 대상 품목축종의 생산액 비중: ('22) 90% → ('27) 95%

전략 ①

농가의 재해대응력 제고

- 농업재해보험 보장범위 확대
- 농업재해대책과 보완 운영으로 촘촘한 지원체계 구축
- 종합적 상품개선 시스템 운영
- 농업재해보험을 통한 농가 재해예방기능 강화

전략 ②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험 운영체계 확립

- 농가별 적정 보험료 부과 기반 마련
- 스마트기술을 활용하여 효율적 보험 운영체계 구축
- 손해평가 품질 제고

전략 ③

지속가능한 보험 운영기반 마련

- 보험사업 공공성·투명성 제고
- 재해보험 운영 안정성 제고
- 재보험 운영 안정성 제고
- 보험사업 건전성 제고

추진체계

- 농업재해보험심의회-분과위원회-전문가그룹 운영
- 보험계약DB와 경영체등록정보·농지대장·팜맵 등 DB 연계

Ⅵ. 세부 추진과제

1

농가의 재해대응력 제고

(1) 농업재해보험 보장범위 확대

◆ 보험 대상 품목·지역 및 보장범위 확대로 보험 가입 촉진

- * 농작물재해보험 주요 품목 보험 가입률: ('22) 53.2% → ('27) 56.0% (5.3% ↑)
- *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 ('23) 70개 → ('24) 73 → ('25) 76 → ('26) 78 → ('27) 80
- * 농업재해보험 가입 농가수: ('22) 55만호 → ('27) 63만호 (15% ↑)

□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지역 확대

- (품목 확대) 더 많은 농가가 보험을 통해 자연재해 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험 대상 품목을 '27년까지 80개로 확대('23~'27)
 - 지자체 대상 정기(격년)·수시 조사로 수요를 파악하고 전문가 평가로 신규 도입 품목을 선정하여 보험 상품화 추진
 - 소규모 재배 품목만 미도입 상황임을 고려하여 농금원을 중심으로 보험화 가능 품목 선제적 발굴도 병행
- (지역 확대) 시범사업을 통해 상품 안정성이 일정 수준 확보된 품목은 보험 적용지역 확대
 - 시·군에서 시범사업 품목의 지역 확대 수요를 제출하면 지역 확대 최소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 보험 적용지역으로 포함
 - * 0.1ha 이상 재배농가수, 생산액 또는 재배면적(택1)
 - 단일 시·군이 최소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인접 시·군과 함께 최소요건 및 부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역 확대 검토
 - * 행정구역 인접, 동일 품종·작형 재배, 기후적 특성 유사 등

- (사업체계 정비) 보험 대상 품목의 시범사업-본사업 대상 명확화 및 전환기준 마련으로 현장의 사업확대 예측 가능성 제고('23)

< 시범사업-본사업 전환기준 개요 >

현재 (AS-IS)	개선 (TO-BE)
· 시범사업을 통해 보험 운영 안정성 등 확인 후 본사업으로 전환(기한 미정)	· 시범사업을 3년씩 최대 3회 추진 후 본사업 전환 여부 평가하여 본사업 전환

□ 농업재해보험 보상 대상 확대

- (농작물 병충해) 기후변화 등을 고려하여 농가 예방 노력만으로 방제가 어려운 자연재해성 병충해로 인한 손실보상 방안 마련(~'24)
- 재해보험의 운영 안정성 담보를 전제로 보장 확대 검토 대상 병충해의 기준(안) 마련('23)

< 검토 대상 병충해 기준(안) >

검토 요건	기준(안)
예방 가능성	· (불가항력적 재해) 농가의 재해예방 노력만으로는 예방이 어려워면서 농가의 방제 소홀 여부 판별이 가능한 병충해
피해 정도	· (대규모 피해) 다수 농가에 걸쳐 피해가 대규모로 발생
손해평가	· (진단) 병징이 뚜렷하여 해당 병충해 진단이 용이 · (손해평가) 전문인력이 피해에 대해 손해평가 가능

- 병충해 보장 필요성(중요도·시급성 등)이 높은 품목*과 보장 방안**을 검토하고 도입계획을 수립('24)하여 보험 상품화·판매

* 손해율, 병충해 피해 규모·정도, 현장 수요 등을 바탕으로 중요도·시급성을 고려해 검토

** 예: 특약 또는 별도 주계약 상품으로 정액 담보, 지수보험, 생산비 보장 등

- (가축 질병) 질병 치료 필요성과 보험 수요가 높은 축종(소)에 대해 재해보험을 통한 치료비용 보상 방안 도입 검토('25~)

-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사업('20~'24) 성과 분석 후 통합 방안 마련

* 예: 가축재해보험(소)에서 질병치료 특약을 운영

< 농작물·가축재해보험 보장범위 확대(안) >

현재 (AS-IS)	개선 (TO-BE)
· (병충해) 4개 품목에서 병충해 보장 · (질병)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사업 운영	· (병충해) 병충해 보장 품목 확대 · (질병) 가축재해보험에서 질병치료 보장

[2] 농업재해대책과 보완 운영으로 촘촘한 지원체계 구축

◆ 재해대책과의 보완 운영 및 수입보장보험 개편으로 재해안전망 견고화

□ 농업재해대책과 농업재해보험 보완 운영

- 재해복구비 단가 인상에 따라 보험금이 복구비보다 적은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그 차액을 복구비로 지급하도록 제도개선 검토("23~)
- 보험금이 복구비 이상으로 지급되도록 운영함으로써 농가가 재해 위험수준, 보험료 부담 의지 등에 따라 보험 가입 여부 선택

< 농업재해복구와 농업재해보험 운영 >

현재 (AS-IS)	개선 (TO-BE)
▶ 농작물 피해 발생 시 보험 가입 농가에는 보험금, 미가입 농가에는 복구비(대파대) 지원(중복 불가) ▶ 복구비(대파대) 단가 인상으로 보험금 역전 현상 발생 가능	▶ 보험금이 복구비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복구비로 지급하도록 「농어업 재해보험법」을 개정해 역전 현상 예방 * 풍수해보험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3 사례 참고

□ 수입보장보험 개선

- 농가의 수입(품목별 판매량·수입)을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파악하여 감소분을 보상할 수 있도록 수입보장보험 개선("23~)
- 연구용역* 결과를 기초로 간담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개선방안 마련("23)
- * 수입보장보험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23, 한국농식품정책학회)
- 가격 변동성, 농가 수입 파악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현행 시범사업의 대상 품목과 지역 조정

[3] 종합적 상품개선 시스템 운영

◆ 과제별 난이도·시급성 등에 따른 체계적 상품개선시스템 구축·운영

□ 농작물재해보험 상품개선체계 구축

- (추진주체 정비) 전문성을 바탕으로 개선안을 마련하는 전문가 그룹*과 개선안을 논의·의결하는 농작물분과위원회** 구성('23)

* 보험, 품목 등 분야별 실무 전문가로 구성** 품목 담당부서, 관련 기관단체 등 대표자로 구성

- (검토 체계화) 정기(연 2회/매 5년)·수시(필요시) 검토과정 운영('23~)
 - 연 2회 검토 시에는 현장의 개선 요구사항 중심으로, 매 5년 검토 시에는 품목별 보험요율·보장내용 등 검토

< 상품개선체계 구축·운영계획(안) >

현재 (AS-IS)	개선 (TO-BE)
· 현장 요구 중심으로 제기된 품목에 대해 연 2회 상품개선 · 관계기관 검토, 상품개선자문단 자문 통해 개선안 도출	· 연 2회 상품개선 + 매 5년 주기 전품목 정기검토 및 개선 · 단기·중장기과제로 나누어 자문, 연구 통해 개선안 도출, 분과위 심의·확정

□ 농작물재해보험 상품개선체계 운영

- (개선안 마련) 난이도, 시급성 등에 따라 개선과제를 구분하여 전문가그룹 자문·연구 등 거쳐 개선안 마련('23~)
 - 현장 의견수렴 및 분과위원회 심의 통해 개선안 확정
- (환류) 상품개선 결과를 분석하여 효과 미흡 시 보완('23~)

< 상품개선 추진 과정 >

단계	추진 주체	추진 내용
1. 개선과제 도출	농식품부·농금원	· 품목·이슈별로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제시
2. 개선안 마련	관계기관 전문가그룹	· (단기) 농식품부, 농금원 등 관계기관 검토·협의, 전문가 자문 등 거쳐 개선안 도출 · (중장기) 전문가 연구 등 통해 개선안 마련
3. 의견수렴	농식품부·농금원	· 지자체, 품목 담당 부서, 단체 등에 의견 조회
4. 개선안 확정	분과위원회	· 상품개선안 검토·논의 후 의결
5. 모니터링	농식품부·농금원	· 상품개선 결과 측정·확인

[4] 농업재해보험을 통한 농가 재해예방기능 강화

◆ 농업재해보험 재해예방 기능 강화

◆ 새로운 보험상품 도입으로 농가의 재해관리장치 다각화

□ 보험을 통한 종합적 재해위험 관리

○ (재해위험 정보) 농진청에서 보험 가입 농가에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의 예측정보를 제공하여 자발적 재해예방 노력 유도('24~)

* 농장 단위로 기온습도 등 기상정보를 추정하여 재해위험을 사전 예보하는 서비스(농진청 운영)

- 서비스 신청 농가에 조기경보 정보를 제공하고, 재해예방 조치실적이 확인된 농가에는 방재시설에 준하여 보험료 할인

○ (시설 관리) 보험을 통해 농가의 축사시설 전기안전 점검, 적정사육기준 준수 등을 유도하여 폭염, 화재 피해 등 예방('24~)

- 보험료 할인 대상 확대*를 통해 축사시설 안전점검 시행을 촉진하고, 보험료 지원 시 축산법에 따른 적정 사육기준 준수 의무화(산란계, '25)

* (기존) 전기안전 점검 시 보험료 할인 → (개선) + 화재·가스안전 점검 시에도 할인

○ (재해정보 제공) 재해보험·복구, 농진청의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 등 DB 연계로 농가에게 농지별 재해정보 제공('25~)

- 보험사업자가 가입 희망 농가에 해당 농지의 재해 피해 정보를 제공하여 보험 가입 시 보장내용 선택 등 의사결정 지원

□ 경영안전망 확충을 위한 새로운 보험상품 기획

○ (협업 강화) 농금원 주도로 대학, 보험 관련 연구기관 등과 신상품 발굴을 위한 다양한 단기 협업 프로젝트 진행('23~)

○ (중장기 R&D) 농금원과 전문연구기관이 함께 재해 대응 안전망 다각화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보험상품* 연구·기획('23~)

* 예: 농가단위 수입보험, 기초보험, 비보험작물지원방안(예: 미국 NAP) 등

(1) 농가별 적정 보험료 부과 기반 마련

◆ 농가의 재해위험 수준에 부합하는 적정 보험료 부과 기반 마련

□ 보험가입금액의 농가 부합성 제고

< 보험료 산출기준 >

- 보험료 = **보험가입금액*** × 시·군 기본보험요율 × 개인별 할인·할증률 등
 - * 재해 피해 발생 시 보험에서 최대로 보상할 수 있는 한도액(농가와 보험사 간 약정 금액)
- 보험가입금액 = 농지별 최근 5년 **평년수확량*** × **기준가격**(최근 5년 도매시장 가격)
 - * 농지별 조사 수확량과 **표준수확량**(조사 수확량 없는 경우)을 가중평균하여 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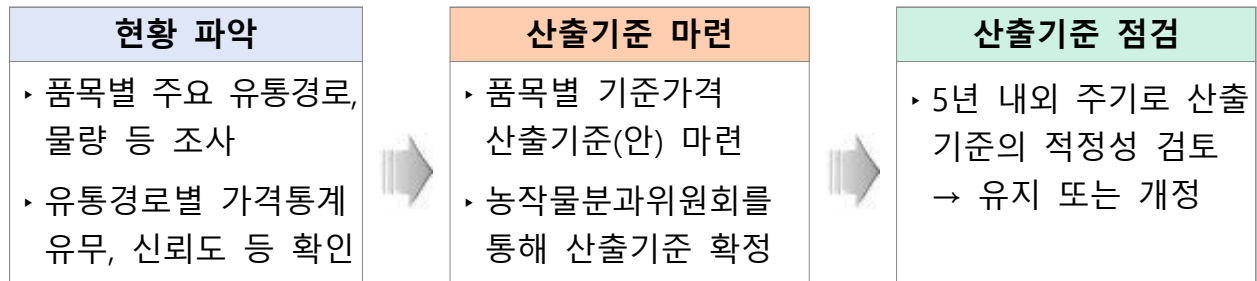
- (수확량) 농지의 실제 수확량을 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평년수확량 산정 방법**을 개선하고, **표준수확량을 현행화**(‘23~)

< 평년수확량 산정방법 개선(안) >

현재 (AS-IS)	개선 (TO-BE)
▶ 5년 수확량 산술평균	▶ 5년 수확량 산술평균과 7년 수확량 올림픽평균 중 선택

- 농지별 조사 수확량이 없는 경우 적용하는 **표준수확량**을 주기적으로 **현행화**(품목 특성 등 고려해 5~10년 기준 적용)
- (기준가격) 품목별 유통경로, 가격통계 확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표성을 갖춘 가격 산출기준** 재정립(‘23)
 - 상품개선 전문가그룹 등과 함께 연구를 통해 품목별 유통경로·과정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산출기준(안) 마련
 - * (기존) 가락도매시장 가격을 주로 적용 → (개선) 품목별로 유통경로 등 고려하여 전국공영도매시장 등의 가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준 설정

< 기준가격 산출기준 정립 체계(안) >



□ 보험요율 산정·적용기준 합리화

○ (산정 세분화) 농가별 위험수준에 부합하는 보험료 산정('23~)

- 시·군 단위로 산출되고 있는 기본요율을 읍·면 단위로 세분화하여 적용하는 품목 확대('23: 사과·배 → '24: + 벼, 단감, 뽕은감)

* 가입률이 높으면서 보험료 부담이 큰 품목을 중심으로 순차 적용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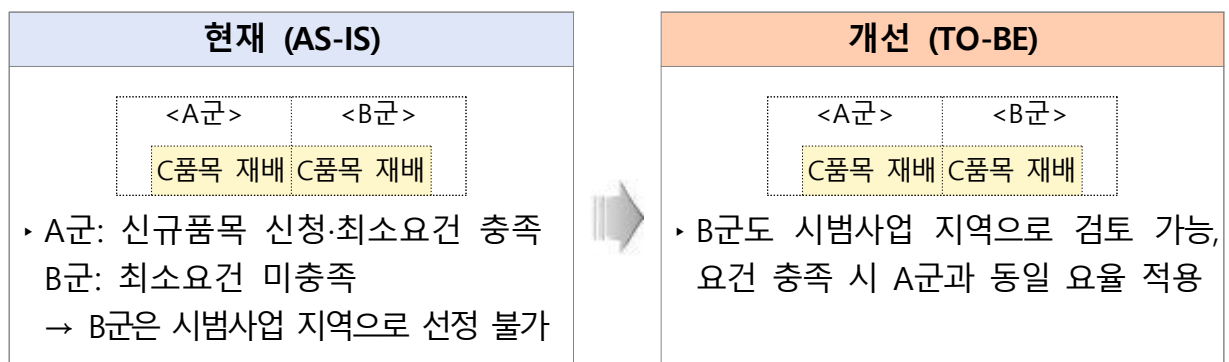
- 동일 품목 내 재배작형·품종 등에 따른 위험도 차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보험요율을 분리 산출하여 적용

* 예: 감귤에서 온주밀감(주로 노지재배)과 만감류(시설재배)의 요율을 분리하여 산출('22~)

○ (적용 유연화) 품목·지역 확대 시 행정구역이 인접한 시·군에서 재배되는 작물이 일정 요건* 충족 시 동일 요율 적용('23~)

* 재배 품목·품종·작형 및 지역의 기후적 특성 유사성 등 검토

< 지역 확대 시 요율 적용 유연화 예시 >



[2] 스마트기술을 활용하여 효율적 보험 운영체계 구축

- ◆ 신속·정확한 운영체계 확립으로 보험 운영 효율성 제고
- ◆ 농가의 손해평가 과정 참여로 손해평가의 공정성 향상

□ 데이터 기반 보험 운영 효율화

- (계약 인수) 전산화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가입 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고, GIS·AI 등 기술 활용으로 현지조사 최소화('23~)
 - 농업경영체·농지대장 DB와의 연계,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등으로 가입자의 서류 증빙을 줄이고 전산 확인 확대('23~)
 - AI 기반 지리정보시스템 검증모델* 등을 활용하여 논·밭작물 계약 인수 시 현지조사 최소화 및 계약정보 정확도 제고('25~)
- * 위성지도, 항공사진, 지적도 등을 바탕으로 AI가 농지의 보험목적물 유무, 재배면적 등을 파악하는 시스템(농금원·NH손보에서 개발 중, '22~'23)

< 계약 인수 간소화 방안 >

현재 (AS-IS)	개선 (TO-BE)
▸ 가입자격·경작현황 입증서류 등 제출 ▸ 보험목적물, 농지면적 등 현장 확인	▸ 전산으로 확인 또는 제출 서류 최소화 ▸ 현지조사 없이 항공사진 등으로 확인

- (손해평가) 신속·정확한 손해평가를 위해 모바일 손해평가를 확대('23~)하고, 드론, 영상 등 활용 기법 시범도입('24~)
 - 서면 수기방식에서 모바일 앱 활용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전환
- * 모바일 손해평가 품목: ('18) 5개 → ('20) 23 → ('22) 45 → ('23) 47 → ('27) 57
- 드론 등을 활용한 피해 파악 기법, 농가가 영상으로 피해 사실을 입증하고 보험사에서 피해율을 파악하는 기법 시범도입 검토

○ (검증조사) AI 기반 지리정보시스템 검증모델, 기상데이터 등을 통해 인수·손해평가의 적정성 검증('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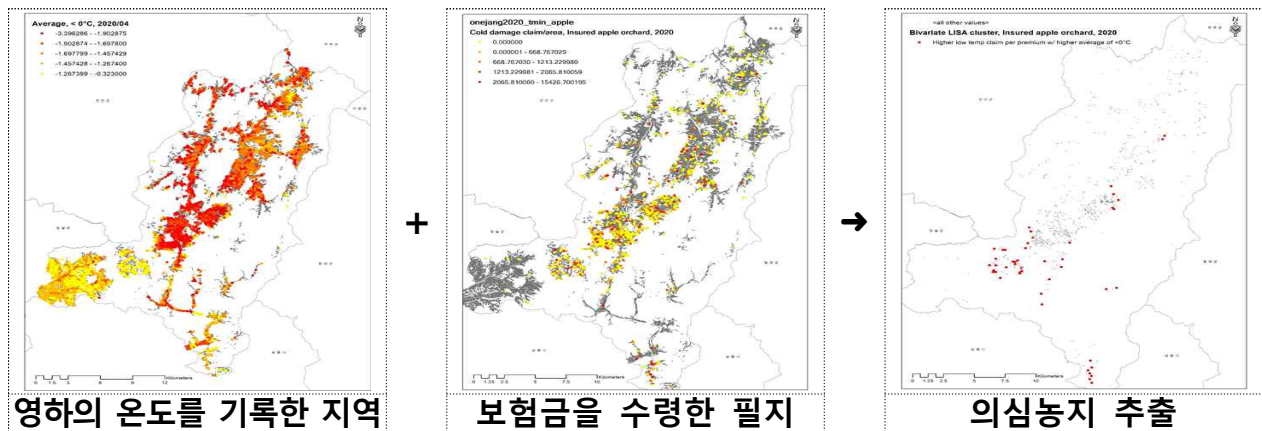
* 검증모델 구축 완료(~'23.上) → 시범운영('23.下~) → 검증조사 시 적용('24~)

- 가입자의 계약·보상정보가 위성지도, 기상데이터, 기상청 등의 예측정보와 불일치하는 경우 등을 의심농지로 선별

* 예: 위성지도·항공사진 상 경작면적이 계약상의 재배면적과 상이한 경우, 농장단위 예측정보와 사고접수·보험금 지급 데이터가 불일치하는 경우 등

- 의심농지 대상 현장조사를 실시, 오류 적발 시 계약 정정 등 추진

< (예시) 냉해 피해 보험금 부적정 지급 의심농지 추출 >



□ 모바일 활용 가입자 편의성 제고

○ (보험료 정보제공) 농지별 예상 보험료 정보를 제공하여 재해위험 대응 관련 농가의 의사결정 지원('24~)

- 웹에서 품목, 자기부담비율 등 상품 조건에 따른 보험료 정보, 보험 가입절차·방법, 보험료 납부 및 보험금 지급절차 등 안내

* 보험사업자 웹페이지 개발('23) → 보험료 정보제공 및 가입절차 등 안내('24~)

○ (보상절차 안내) 사고접수 후 가입자에게 손해평가, 보험금 산정 등 진행절차·상황을 SNS·문자 메시지 등으로 안내('23~)

- 농가의 재생산 활동이 계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재해피해 손실 보상 일정의 예측 가능성 제고

[3] 손해평가 품질 제고

- ◆ 적정 규모의 손해평가인력 운영으로 손해평가의 적시성 확보
- ◆ 손해평가인력의 전문성 향상으로 손해평가의 공정성·정확성 제고

□ 적정규모의 손해평가 전문인력 운영

- (인력운영계획) 중장기 손해평가 인력 확보·운영계획 수립('23)
 - 거대재해 시 신속한 손해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손해율에 따른 소요 인력 규모를 추정하고 유효인력 운영방안 제시
 - 보험사업 운영과정에서 손해평가사의 역할을 확대하는 등 연중 활동 여건 마련
 - * (기존) 피해사실 확인, 보험가액손해액 평가 등 → (개선) +인수단계 보험목적물 현지조사
- (자격시험 개편) 전문성을 갖춘 손해평가 유효인력 운영을 위해 자격시험제도 변경 시행 검토('23)
 -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적정규모로 선발하기 위하여 시험과목, 시행주기, 평가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경안 마련
 - * 예: 시험과목(5개→5~7개), 시행(매년→격년), 평가방식(절대평가→상대평가)
 - 제도 안착과 시험 준비인력의 혼란 최소화를 위해 중요 변경사항을 사전 예고하고 단계적으로 시행('27~)

□ 손해평가인력의 전문성 향상

- (현장 중심 교육) 실무·보수교육의 현장성 강화('24~)
 - 실무·보수교육 시 이론 강의 외에 현장실습을 추가*하고, 필요시 농금원, 재해보험사업자, 손해평가협회 등이 함께 교육과정 운영**
 - * (기존) 온·오프라인 강의 → (개선) 온·오프라인 강의 + 현장실무실습
 - ** 예: (농금원) 온·오프라인 이론 강의 → (보험사업자·손해평가협회) 현장실무실습

- **(보수교육 강화)** 변화하는 보험 정책환경을 고려하여 정기교육 주기를 단축(3년→2년)하고, 수시교육 도입('24~)
 - 교육과정에 대상 품목 확대, 병충해 보장 등 변화를 고려하여 2년마다 정기 보수교육 실시
 - 정기교육 외에도 필요시*마다 수시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손해평가인력의 전문성 향상 유도
- * 예: 다수 계약자로부터 재조사를 요청받거나 농금원·보험사업자가 실시한 검증조사에서 지적받은 손해평가인력 등
- **(교육 다변화)** 신규품목 도입, 병충해 등 보장범위 확대, 현장의 전문성 강화 요구 등에 대응하여 교육 운영 다변화('25~)
 - 실무·보수교육 과목을 확대하고, 신규 교육 콘텐츠 개발

< 손해평가사 교육과정 변경(안) >

현재 (AS-IS)	개선 (TO-BE)
▶ (실무교육) 관련 법령·제도, 손해평가 이론·실무, CS·청렴교육 등 ▶ (보수교육) 보험상품 및 손해평가 이론·실무, CS·청렴교육 등	▶ + 작물 재배학, 축산학, 농작물 병리학·가축 질병학 등 추가

- 중장기적으로 실무수습제 운영, 교육 주체 다각화 등 방안 검토

□ 손해평가 재조사 의무화 및 이의신청 절차 신설

- **(재조사 의무화)** 보험가입자가 손해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어 요청 시 보험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재조사를 하도록 제도 개선('23~)
- **(이의신청 제도화)** 재조사를 시행하였음에도 이의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농금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절차 마련('23~)

< 손해평가 재조사 및 이의신청 >

현재 (AS-IS)	개선 (TO-BE)
▶ (재조사) 가입자 요청 시 보험사업자가 재조사 가능(손해평가요령 고시에 규정) ▶ (이의신청) 관련 규정 없음	▶ (재조사) 가입자 요청 시 보험사업자가 재조사 해야함(농어업재해보험법에 규정) ▶ (이의신청) 농금원에 신청 절차 마련

(1) 보험사업 공공성·투명성 제고

◆ 보험 설계·운영과정에서의 공공성·투명성 강화로 정책 신뢰도 제고

□ 보험상품의 기초설계 과정 개편

- (상품설계) 농금원*이 보험 전문기관과 함께 상품구성 기본사항(안)을 마련하고 분과위원회에서 설계내용 확정('24~)

* 보험상품 TF 등 조직, 예산 등 기반 구축('23) → 상품기획 전담조직 설치·운영('25~)

- 농금원이 농진청, 대학, 보험전문기관 등과 협업·연구 통해 보장 방식, 보험요율, 표준수확량 등 상품구성 기본사항(안)* 마련
- 농작물분과위원회에서 상품구성 기본사항(안)을 검토하여 확정

- (상품운영) 확정된 상품구성 기본사항을 보험사업자에게 제시하고, 사업자는 이를 바탕으로 상품 내용을 구체화하여 판매('25~)

* 상품구성 기본사항 변경 필요시 보험사는 농금원·농식품부 등과 사전 협의

< 보험상품 설계·운영과정 개편(안) >

현재 (AS-IS)	개선 (TO-BE)
▶ 보험사업자가 상품설계·판매 전담 - 설계 시 농진청, 보험개발원 등과 연구용역 추진	▶ (상품설계) 농금원에서 협업·연구 통해 상품구성 기본사항(안)을 마련 ▶ (판매·운영) 기본사항 바탕으로 보험 사업자가 상품내용 구체화·판매

□ 보험 운영과정의 투명성 제고

- (보험료 정보공개) 보험료 산출기준·내용 등 공개('23~)
 - 시·군별 보험요율, 표준수확량·기준가격 등에 관한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주기적으로 게시하여 투명한 정책환경 조성
- (변경사항 사전 안내) 보험요율, 약관 등을 변경하는 경우 상품 및 약관 개정안을 공고하고 의견 수렴('23~)

[2] 재해보험 운영 안정성 제고

- ◆ 보험요율 검토체계 운영으로 적정 보험요율 수준 유지
- ◆ 보험료 지원 효율화로 원수보험 재정 건전성 제고

□ 보험요율 및 보장내용의 적정성 검토체계 마련

- (적정성 검토) 보험 관련 전문기관을 통해 일정 주기(5년)로 품목별 누적 손해율을 기준으로 보험요율·보장내용의 적정성 검토('24~)
 - * 검토 주체·방식·기간 등 검토·확정('23) → 적정성 검토 이행('24~)
- (상품개선) 각 품목이 목표 손해율(90~110%) 범위 내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 결과에 따라 보험요율, 보장내용 등 개선('24~)
 - 적정 요율을 제시하고, 상품개선체계와 연계하여 보장내용 개선

□ 정부 지원 효율화

- (자기부담비율 다양화) 낮은 자기부담비율 상품(10·15%형) 운영 품목 및 자기부담비율별 보험료 차등지원 품목 확대
 - 농가 필요에 따라 보장수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자기부담비율 10·15%형 운영 품목을 확대*하고, 10·15%형 상품의 가입요건 완화**
 - * 10·15%형 상품 운영 품목: ('22) 27개 → ('23) 31 → ('25) 34 → ('27) 37
 - ** (기존) 32년 연속가입 및 누적손해율 100% 미만 → (개선) 32년 연속가입 및 누적손해율 120% 미만
 - 과수 4종과 벼에서 시범운영 중인 자기부담비율별 보험료 차등 지원제도를 확대('23: 5개→'27: 8)하고, 단계적으로 적용
- (영세농가 고려) 영세농가(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의 경영안전망 강화를 위해 보험료 추가 지원방안 검토('24~)
 - * 풍수해보험, 농업인안전보험 등 타 정책보험 사례 참고
- (지원 상한제) 한정된 예산 하 보험 혜택의 균형 있는 확산을 위해 보험료 국고지원 상한액(5천만원, 농작물) 설정('24~)
 - * 가축재해보험에서도 보험료 국고지원 상한액(5천만원) 운영 중('20~)

[3] 재보험 운영 안정성 제고

◆ 국가재보험 유형 구분 개편 및 확대 운영으로 재보험 운영 안정화

□ 국가재보험 유형 구분 개편

- (유형 구분) 기준은 명확하게, 운영은 유연하게 하고자 유형 구분을 '본사업-시범사업유형'에서 '고위험-중저위험유형'으로 변경('24~)
 - 각 유형에 포함되는 품목은 원수보험의 본사업·시범사업 품목 구성, 최근 3년간 누적 손해율, 손해액 등을 기준으로 유연하게 조정
- (정보 공유) 유형별 상품구성 변경이 예상되는 경우, 민간재보험사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변경사항 사전 안내('23~)
 - * 예: 재보험 약정 체결 2~3개월 전 유형별 상품구성 정보를 시장에 제공
 - 보험사업자를 통해 민간재보험사에 변경 목적, 내용 등을 공지

□ 국가재보험 확대 운영

- (재보험 확대) 질병 치료 보장* 등에 대비하여 재보험의 위험분산 기능 강화**를 위해 가축재해보험 국가재보험제도 도입 검토
 - * 가축 질병 치료 보장 시 손해율 증가 우려가 있어 국가가 일정 부분 손해를 부담할 필요
 - ** 가축과 농작물은 손해 발생빈도·심도가 큰 연관이 없어 위험분산 기능 강화 가능
 - 유형 구분, 국가와 원수보험사 간 인수비율 등 결정을 위해 관련 전문가, 보험사업자 등의 의견수렴('23) 및 세부계획 수립 추진('24)
 - 농어업재해보험기금 조달, 민간재보험사의 참여 유도 등을 위해 충분한 사전 예고기간(1~2년)을 두고 도입

[4] 보험사업 건전성 제고

◆ 보험사업 운영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여 건전성 제고

□ 부실계약 예방 노력 강화

- (검증조사) 항공사진, 기상·재해 정보 등을 활용한 보험계약 검증 조사를 확대하고, 결과에 따라 부실계약 정정('23~)

* 조사건수: ('20) 7,089건 → ('22) 17,785 → ('23) 20,000 → ('25) 22,000 → ('27) 24,000

- 보험사업자의 부실계약 예방 노력과 부실계약, 보험금 부당지급 등 관리현황, 관계자 제재조치 이행현황 등도 함께 점검

- (현지조사 개선) 인수과정에서 가입정보 현지 조사 주체*를 확대 하여 조사의 적시성·충실성 제고('24~)

* (기존) 보험사 대리점(지역농축협 등) → (개선) 손해평가사 추가

**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23) → 조사 주체 확대('24~)

□ 보험사업 관리·감독 강화

- (관리기능 강화) 농식품부와 농금원이 보험사업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23)

* (기존) 정부·사업관리자 등의 자료제출, 시정요구 권한에 대한 법적 근거 부재 → (개선) 농어업재해보험법에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점검 시 필요한 경우 조치 이행

- 지침 개정 통해 보험금 부당 지급 관계자에 대한 제재도 구체화

- (집행점검 실효성 제고) 보험사업자가 집행 관련 규정* 위반 시 농금원이 보조금 환수 등을 조치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24)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령 및 사업시행지침,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

- (보험사업자 평가) 농금원이 평가기관을 통해 보험사업자의 정책 보험 운영실적, 성과 등을 주기적으로 평가('24~)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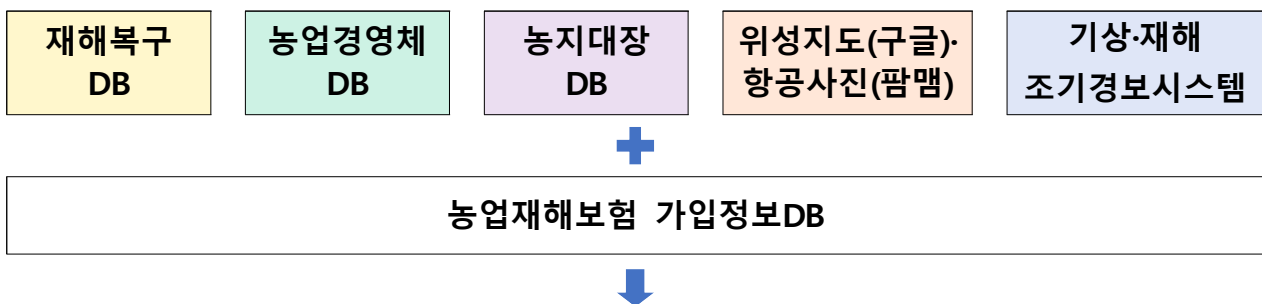
중장기 발전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

◆ 유기적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농업재해보험 운영체계 구축

□ 농업정책과의 연계 강화

- (DB 연계) 농업분야 타정책DB와 보험 가입정보DB의 연계로 보험 운영 효율성·건전성 제고 및 가입자 편의성 향상('23~)
 -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 DB간 연계 등의 방안을 복합적으로 활용

< 데이터 연계 강화 개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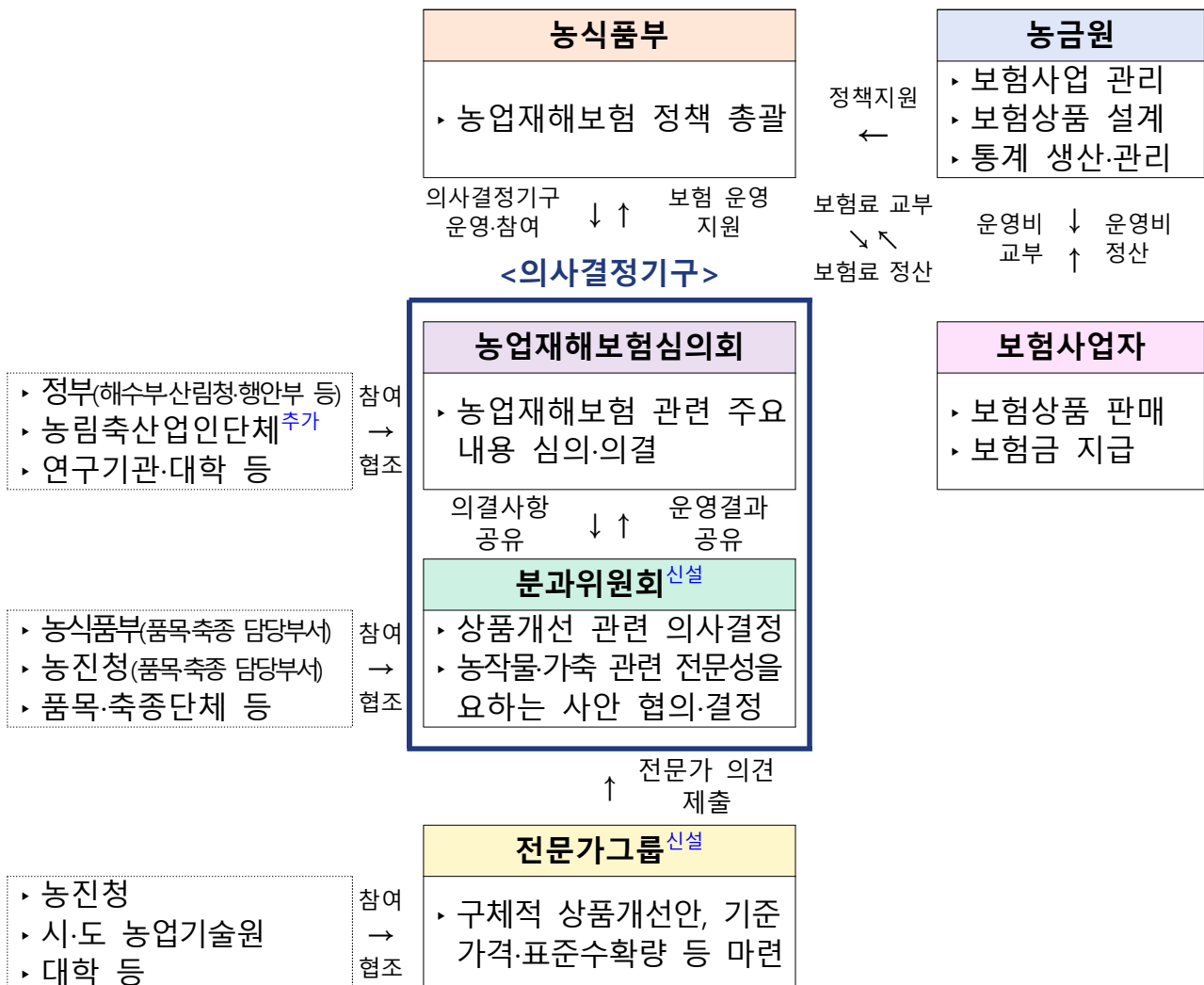
- ▶ 보험 가입 희망 농가에 농업재해정보 제공 → 보험가입자의 의사결정 지원
- ▶ 계약 인수 절차 간소화 → 가입 편의성 제고 및 계약 인수의 특정시기 집중문제 완화
- ▶ 부실계약 검증조사 대상을 효율적으로 추출 → 보험 운영 건전성 제고

- (정책 연계) 영세농, 재해 예방 노력 농가 등을 배려하고, 타 재해 지원 정책 및 지자체, 대학 등 관련 주체와의 협업 강화('23~)
 - 보험료 지원비율 상향, 보험료 할인 등을 통해 영세농, 자발적 재해 예방 노력 경주 농가 등의 보험 참여를 유도
 - 풍수해보험, 재해대책 등 타 재해지원 정책과 연계 운영
 - * 예: 동일 보험목적물에 대한 보험 중복 가입, 복구비 중복 지원 등 예방
 - 지자체, 대학 등의 관련 담당자·전문가 등과 품목 확대 및 상품 개발, 보험 제도개선, 보험료 산정기준 개선 등 협업 추진

□ 농업재해보험 운영체계 구체화

- (기본방향) 관련 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의사결정기구·전문가 그룹과 정부가 보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결정하여 추진
- (의사결정기구) 보험 운영 관련 사안의 층위에 따라 농업재해보험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에서 주요 사안을 논의하여 결정('23~)
 - 심의회에서는 기본계획 수립, 보험 운영 관련 주요 내용 등을 의결하고, 분과위원회에서는 상품개선 등 세부사항 결정
- (전문가그룹) 농작물 품목과 가축 축종별 구체적인 상품개선안, 기준가격·표준수확량 등 전문적인 정보·자료 등 생산·제공('23~)

< 농업재해보험 운영체계 >



VII. 추진일정

연번	추진과제	주관 [협조]	일정
----	------	------------	----

전략 1. 농가의 재해대응력 제고

(1) 농업재해보험 보장범위 확대			
①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지역 확대	농식품부	'23~
②	농업재해보험 보상 대상 확대	농식품부 (농진청)	'23~
(2) 농업재해대책과 보완 운영으로 촘촘한 지원체계 구축			
①	농업재해대책과 농업재해보험 보완 운영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34조 개정, 시행령 제17조의3 신설	농식품부 (행안부·기재부)	'23~
②	수입보장보험 개선	농식품부 (KREI)	'23~
(3) 종합적 상품개선 시스템 운영			
①	농작물재해보험 상품개선체계 구축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3조 제6항 개정	농식품부	'23~
②	농작물재해보험 상품개선체계 운영	농식품부	'23~
(4) 농업재해보험을 통한 농가 재해예방기능 강화			
①	보험을 통한 종합적 재해위험 관리	농식품부 (농진청)	'24~
②	경영안전망 확충을 위한 새로운 보험상품 기획	농식품부 (KREI·대학 등)	'23~

전략 2.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험 운영체계 확립

(1) 농가별 적정 보험료 부과 기반 마련			
①	보험가입금액의 농가 부합성 제고	농식품부	'23~
②	보험요율 산정·적용기준 합리화	농식품부	'23~

(2) 스마트기술을 활용하여 효율적 보험 운영체계 구축			
①	데이터 기반 보험 운영 효율화	농식품부	'23~
②	모바일 활용 가입자 편의성 제고	농식품부	'23~
(3) 손해평가 품질 제고			
①	적정규모의 손해평가 전문인력 운영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의3 개정	농식품부	'23~
②	손해평가인력의 전문성 향상	농식품부	'24~
③	손해평가 재조사 의무화 및 이의신청 절차 신설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의8 신설	농식품부	'23~

전략 3. 지속 가능한 보험 운영기반 마련

(1) 보험사업 공공성·투명성 확보			
①	보험상품 기초설계 과정 개편	농식품부	'24~
②	보험 운영과정의 투명성 제고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9조 제2항 신설	농식품부 (농진청)	'23~
(2) 재해보험 운영 안정성 제고			
①	보험요율 및 보장내용의 적정성 검토체계 마련	농식품부	'24~
②	정부 지원 효율화	농식품부	'23~
(3) 재보험 운영 안정성 제고			
①	국가재보험 유형 구분 개편	농식품부	'23~
②	국가재보험 확대 운영	농식품부	'23~
(4) 보험사업 건전성 제고			
①	부실계약 예방 노력 강화	농식품부	'23~
②	보험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	농식품부	'23~

전략 4. 중장기 발전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

①	농업정책과의 연계 강화	농식품부	'23~
②	농업재해보험 운영체계 구체화	농식품부	'23~

참고

농업재해보험 대상 품목 · 축종 도입현황

☐ 농작물재해보험

연도별	대상 품목	누계
2001	<u>사과, 배</u>	2
2002	<u>포도, 복숭아, 단감, 감귤</u> (온주밀감류/만감류)	6
2006	<u>딸은감</u>	7
2007	<u>밤, 참다래, 자두</u>	10
2008	<u>감자</u> (봄감자/고랭지감자/가을감자), <u>콩, 양파, 고추, 시설투박</u>	15
2009	<u>고구마, 옥수수</u> (일반옥수수/조사료용옥수수), <u>마늘, 매실, 벼</u> (일반벼/조사료용벼)	20
2010	<u>시설투박, 토마토, 오이, 참외, 대추</u>	25
2011	<u>시설투박(고추, 애호박, 국화, 장미),</u> <u>복분자</u> (고창, 정읍, 순창, 함평, 담양, 장성)	30
2012	<u>인삼, 시설투박(멜론, 파프리카), 오디</u> (전북, 전남, 상주, 안동), <u>차</u> (보성, 광양, 구례, 하동)	35
2013	<u>시설투박(부추, 시금치, 상추), 표고버섯, 느타리버섯</u>	40
2014	<u>시설투박(배추, 가지, 파)</u>	43
2015	<u>시설투박(무, 백합, 카네이션)</u>	46
2016	<u>밀</u> (충남, 전북, 전남, 경남, 광주), <u>시설투박(미나리), 양배추</u> (제주), <u>오미자</u> (문경, 상주, 예천, 단양, 장수, 인제, 거창)	50
2017	<u>시설투박(숙갓), 무화과</u> (영암, 신안, 목포, 무안, 해남), <u>유자</u> (고흥, 완도, 진도, 거제, 남해, 통영)	53
2018	<u>양송이버섯</u> (전국), <u>새송이버섯</u> (전국), <u>메밀</u> (전남, 제주), <u>브로콜리</u> (제주)	57
2019	<u>배추</u> (고랭지 - 정선, 삼척, 태백, 강릉, 평창 / 월동 - 해남/가을 - 괴산, 해남, 영양), <u>무</u> (고랭지 - 홍천, 정선, 평창, 강릉 / 월동 - 제주), <u>당근</u> (제주), <u>단호박</u> (경기, 제주), <u>파</u> (대파 - 신안, 진도, 영광, 평창 / 쪽파·싹파 - 아산, 보성)	62
2020	<u>호두</u> (김천), <u>팥</u> (횡성, 나주, 천안), <u>시금치</u> (남해, 신안), <u>보리</u> (해남, 보성, 김제, 군산, 밀양), <u>살구</u> (영천)	67
2023	<u>귀리</u> (강진), <u>시설투박 봄감자</u> (김제, 부안), <u>양상추</u> (횡성, 평창)	70
합계	70개 품목 (79개 상품)	

* 밑줄 친 품목은 본사업 품목임

☐ 가축재해보험

연도별	대상 축종	누계
1997	소	1
2000	돼지, 말	3
2002	닭	4
2004	오리	5
2005	꿩, 메추리	7
2006	칠면조, 사슴	9
2007	타조, 거위	11
2008	양	12
2009	꿀벌	13
2010	토끼	14
2011	관상조	15
2012	오소리	16
합계	16개 축종	

☐ 수입보장보험

연도별	대상 품목	누계
2015	콩, 포도, 양파	3
2016	마늘	4
2017	고구마, 가을감자	6
2018	양배추	7
합계	7개 품목	